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85 발의연월일: 2020. 12. 15.

발 의 자:이상헌·김병욱·김성주

문진석・박 정・안민석

양이원영 · 윤관석 · 이병훈

이용빈 · 임오경 · 홍정민

의원(12인)

제안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대여의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안 제11조제4항).

법률 제 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	
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u>3년</u>	<u>5년</u>
<u>이내</u> 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	이내
조받을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